

2023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사업수행 표준계약서

(주)파빌라 (이하“수혜기업”이라 한다.)(와)과, TK트래블 (이하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이라 한다.), 한국관광공사(이하“관리기관”이라 한다)는 「**2023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**」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휴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.

제1조(목적) 본 계약서는 “수혜기업”이 요청하는 **여행사 ERP + 여행사 웹사이트**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,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, 계약 쌍방의 역할, 책임, 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역의 범위) ① “수혜기업”의 성공적인 혁신성장을 위해,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**여행사 ERP + 여행사 웹사이트**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계약내용 (서비스 제공기업이 수행할 용역 범위)

1. 임직원WEB (모바일)

- 상품리스트
- 상품상세페이지
- 마이페이지

2. 파빌라 관리자 WEB페이지 (PC)

- 대시보드
- 기업관리
- 숙소관리
- 예약관리
- 계정관리
- 임직원관리

3.기업관리자 WEB페이지(PC)

- 대시보드
- 임직원관리
- 신청자관리
- 예약현황
- 자체 기업정보확인

② “수혜기업”의 **여행사 ERP + 여행사 웹사이트** 서비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, 업무범위 및 비용분담에 관해 “수혜기업”과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의 상호 합의 후 추가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3조(계약 기간)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대가지급 및 검사) ①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제2조 제1항의 용역 수행 대가를 아래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.

1.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(선금의 경우) 또는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“수혜기업”의 부가세 해당액을 수령한 후 “관리기관”에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(이하 “서비스금액”이라 한다.) 지급을 신청한다.
2.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서비스금액 선금 신청 시 이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과 선금보증보험증권을 “관리기관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각 1부씩, 총 2부를 발급해야 한다.
 - 가. 지급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를 관리기관으로 설정하고 선금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여 1부 발급한다.
 - 나. 선금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를 수혜기업으로 설정하고 선금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여 1부 발급한다.
 - 다. 보험가입기간은 서비스 계약기간에 90일을 가산한다.
 - 라. 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보험가입기간이 동 기간만큼 연장된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.
3. “관리기관”은 관리기관이 확인한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의 서비스금액 정산신청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금액을 지급한다.

(단위 : 원)

구분	국고보조금	기업분담금	소계	부가세	총계
계약금	20,000,000	0	20,000,000	2,000,000	22,000,000

***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에는 VAT미포함, 총 계약금의 부가세는 수혜기업이 별도부담**

②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“수혜기업”에게 납품하고 용역수행결과를 “수혜기업”과 “관리기관”에 보고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1. 최종보고: 2023년 11월 03일까지

③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, 추진기간 내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“수혜기업” 또는 “관리기관”은 용역 수행 대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 “수혜기업” 또는 “관리기관”이 용역 수행 대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거절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약당사자 의무) “수혜기업”과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본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.

1. “수혜기업”은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이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.
2.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“수혜기업”의 업무상 기밀(정보 및 기술, 자료 등)에 대하여 계약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“수혜기업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, 그 종업원, 대리인,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3.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제안서에 의거, 성실하게 작성된 용역결과물을 “수혜기업” 및 “관리기관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4.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계약 후 계약보증보험증권을 “관리기관”에 제출해야 하며, 계약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.

가. 피보험자는 수혜기업으로 설정한다.

나. 보험가입금액은 계약 금액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%로 설정한다.

다. 보험가입기간은 서비스 계약기간에 90일을 가산한다.

라. 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보험가입기간이 동 기간만큼 연장된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(계약의 해지) ① 본 계약 당사자가 제5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, 각 당사자는 계약 위반 상대방에게 시정을 위한 1차 서면통보를 하고 상당한 시간 내에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“수혜기업” 또는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압류, 가압류, 가처분을 받은 경우

2. 경매,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

3. 당좌거래의 부도처분을 받아 지불정지 상태로 된 경우

4. 전쟁, 화재, 홍수, 지진, 폭풍 등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

③ “수혜기업” 또는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. 사업수행 간 발생한 해지비용에 대한 사항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른다.

④ 계약해지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“관리기관”에 계약해지 사실을 “수혜기업” 또는 “서비스 제공기업” 일방이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며,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기 지급 받은 서비스금액을 공문 통보 후 2주 이내에 “관리기관”에 반환한다.

제7조(손해배상) 제5조 각호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방 당사자의 손해는 타방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
제8조(계약의 해석)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다.

제9조(재판관할) 이 계약의 관할은 “수혜기업”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“수혜기업”과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필요한 경우 이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고, 1부는 “관리기관”에 제출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정해진 운영시스템 상에서의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.

제10조(기타) “수혜기업”과 “서비스 제공기업”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, 기업분담금 리베이트, 서비스금액 유용,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이 확인될 경우 “관리기관”으로부터 지원취소, 기 지급된 서비스금액 환수, 신규참여제한, 법적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.

· 계약체결일 : 2023년 09월 20일

· 계약만료일 : 2023년 10월 31일

(수혜기업)

사업자번호 : 271-87-02426

주 소 :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344번길 17-22 10층 1001호 (민락동)

상호명 : (주)파빌라

대표자 : 박종현

(서비스 제공기업)

사업자번호 : 417-70-01307

주 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39 명경빌딩 5층 (이문동)

상호명 : TK트래블

대표자 : 강일구

(관리기관)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장실

본 계약서는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계약되었으며,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감날인이 없어도 법적효력을 갖습니다.